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09:3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심상정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순서

-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09:3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심상정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사회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인사말	국회 토론회 주최	09:30~0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심상정 의원 금태섭 의원 김종훈 의원 	
1부 발제	차별금지법이 걸린 뒷	09:40~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소) ■ 차별금지법 :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허구적 대립 종식을 위한 패스트트랙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다수의 결정이 존중받지만 ‘지배’하지 않는 사회 김만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부 토론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지정토론(가나다순)	10:40~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학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 김조광수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은혜 (뉴스앤조이 기자)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종합토론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종합토론	11:40~12:00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목차

인사말	국회 토론회 주최 단위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04
	심상정 의원	06
	금태섭 의원	07
	김종훈 의원	08
1부 발제	차별금지법이 걸린 뒷	
	■ 보수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0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소)	
	■ 차별금지법 :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허구적 대립 종식을 위한 패스트트랙	23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다수의 결정이 존중받지만 ‘지배’하지 않는 사회	34
	김만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부 토론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지정토론(가나다순)	
	김정학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	42
	김조광수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46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47
	이은혜 (뉴스앤조이 기자)	49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51

인사말 |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를 다지며



지난 주 어느 날 청와대 앞에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침 그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7일째였습니다. 그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엄청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체팔이’, ‘종북 좌파’라는 말이 그중에 가장 수위가 낮을 정도였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면서 “지겹다, 그만 해 처먹어라”, “애들이 죽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청와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황교안 지지자였고, 청와대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철야기도 하는 정광훈 목사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찬송하면서 유가족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제 어버이연합 추선희, 엄마부대봉사단 주옥순 같은 이들이 도리어 악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혐오세력의 힘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할 정도이고, 지자체들에서는 장애인, 여성, 성평등, 다문화 등 인권 관련 조례 제정마저 이들 혐오세력에 막혀서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법을 개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혐오세력의 악다구니 앞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침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혐오세력의 반인권 표현과 행동을 용인하게 되고, 그런 용인이 혐오세력에게 더욱 큰 힘을 부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벌써 10여 년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 우리 사회는 혐오사회, 차별사회, 불평등 사회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고, 이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는 사회공론장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여는 일은 자못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수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가 신학적 논리구조와 맞닿으면서 개신교 내에서 보편성을 획득해가고 있다는 설명은 섬뜩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심각한 상황을 김현준 연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다수의 결정으로 소수를 배제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함을 지적한 김만권 선생님의 지적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서 우리가 막혀 있는 답답한 현실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현실적인 전략과 운동방향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준비해주시고 토론에 임해주신 분들, 사회를 맡아주신 홍성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열어주신 심상정, 금태섭, 김종훈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동료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입니다. 긴 겨울을 이기고 마침내 찬란한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래군**

인사말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래군 대표님, 금태섭 의원님, 김종훈 의원님, 홍성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김현준 연구원님, 여세연 이진옥 대표님, 연세대학교 김만권 교수님, 토론을 해주실 김정학 팀장님, 김조광수 위원장님, 이승훈 처장님, 이은혜 기자님, 조혜인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은 도를 넘었습니다. 작년에 입국한 예멘 난민 50명은 ‘범죄가 증가할 거다, 세금낭비다’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야 했고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은 일상적인 차별들을 감내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정체세력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등한시한 채 혐오발언과 혐오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다양한 차별 현실을 알리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제20대 총선, 제19대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아직 법안 발의요건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발의 및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낡은 과거에 머물러있지만 정의당은 포기하지 않고 소수자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김조광수 감독님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장으로 계시고,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으로 계신 만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여러분의 열망을 받아 안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적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1948년 동시에 탄생한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모두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외모, 인종, 나이, 장애, 종교, 가족유형,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현상이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지와 편견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왼손잡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정상인 것처럼 성소수자 또한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의 특징, 성격,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방향을 찾는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하며,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우리 사회에서의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다듬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인사말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오랜 기간 표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 묻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공동주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금태섭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분들, 토론을 해주실 분들, 토론회 실무를 준비해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청중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법은 나라를 경영하는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억울한 시민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당하는 무수한 이들이 12년째 차별을 금지하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도 그 길은 어둡기만 합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성별, 성적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녀야 마땅합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서로 토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전제로 하는 토론은 제대로 된 토론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차별의 금지,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권리옹호는 민주주의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는 12년째 표류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을 찾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발제와 토론자로 나서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인사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발제와 토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4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1부. 발제

차별금지법이 걸린 덧

- 보수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차별금지법 :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허구적 대립 종식을 위한 패스트트랙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다수의 결정이 존중받지만 '지배'하지 않는 사회
| 김만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발제 1.

보수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사회학 연구자)

들어가며

보수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사실인데다가 그간의 입법과정에서 이들의 힘은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개신교가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다양한 설명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더 나은 설명(들)이 왜 필요한가? 나는 이 발제에서 이른바 “혐오선동세력”으로 통칭되는 보수개신교에 대한 보다 분석적이고 내재적인 이해를 통해 어떻게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의 연대를 보다 잘 구축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

이른바 ‘혐오선동세력’은 보수개신교 일반과 구분될 수 있을까? 나는 이 우문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종교 또는 개신교 고유의 선함을 믿고 그 진정성과 행위를 선의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혐오선동세력이 진정한 기독교, 참된 신앙인이 아니며 개신교 일반신자 대중을 ‘선동’하고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시민사회나 공적 정치의 영역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므로써 ‘더하기의 정치’에 관철은 전략이다. 실제로 어느 사회집단이나 권력자나 선동가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순수하고 순진한’ 보통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보수개신교인들이 혐오의 적극적 가담자라고 상상하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의 평범해 보이는 신자들이 우익 집회에 나오고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조례에 반대민원을 넣는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평신도들이 내 친구이거나 가족이라면 우리는 더욱 더 보수개신교에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각각의 정반대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찾을 수 있고, 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경험을 현재로서는 통계적으로 또는 빅데이터 기법으로 알아내어 우위와 경향성을 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공공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표상되는 집단들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수개신교의 담론(종교문화와 지식체계)의 관련성을 찾아냄으로써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혐오구조의 문화정치학을 구성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는 혐오선동세력과 개신교 신자대중 등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는/차별금지법 반대의 토대 정동이 되는) 혐오문화의 강화가 양자 간의 문화적/담론적 기제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선동-동원 체제 모델뿐만 아니라, 이하에서 언급하겠지만 선동세력(종교와 정치)의 이해관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기도 하다.¹⁾

1) 본 발제문은 본인의 기존 글들과 학회 발표문들에 기초하였으며, 별도의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밝힙니다. 서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혐오선동세력과 보수개신교(세력 및 신학)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양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증오감정 및 극우정치를 고유의 종교적 신념과 분리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오감정이나 혐오의 선동은 보수개신교의 일상적 신앙과 분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혐오와 신앙이 상호 즉각적으로 변환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이를 매개하는 여러 혐오선동조직들, 그리고 이들이 재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담론의 이 중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전히 ‘선동-동원’ 모델이 아닌가? 왜 그렇지 않은지 보자. 혐오선동세력에서 보이는 독특한 극우주의와 종교 내셔널리즘은 보수개신교의 내적 논리(지식담론)와 우익 정치이데올로기의 혼합물이며 선동조직이나 종교조직의 신앙훈련이나 지역교회의 의례(예배와 강연) 현장 안에서 주도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혐오나 차별금지법 반대의 논리는 세속우익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수개신교 지식(신학 등)의 체계적인 번역의 산물이다. 예컨대 보수교회 안에서 반공주의는 ‘동성애독재’, ‘젠더전체주의’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좌파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그 의미가 왜곡/강화된다.

주지하다시피, 보수우익 개신교는 70~80년대 ‘국가조찬기도회 정치’를 시작으로, 90년대 한기총의 ‘광장정치’와 기독교당을 거쳐, 2000년대 역시 기독교당과 기독교 뉴라이트라는 ‘전문적 사회운동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2010년 전후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혐오와 차별 기반의 전방위적 신자대중 동원조직으로 그 전략적 형태를 바꾸며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바성연>, <건사연> 등 보다 전문적인 운동조직이 활동 중이다. 이 과정에서 극우 담론은 보다 치밀해졌고, 개교회와 하위 집단 내의 극우 이데올로기는 강화되었으며, 이에 기반한 대중정치는 극우주의를 그 동력으로 삼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개신교 보수주의는 반공주의와 근본주의를 그 핵심으로 하는데, 최근의 극우적 보수주의는 반공주의에 동성애혐오, 여성혐오(반여성주의), 이슬람/이주민혐오(인종주의)를 추가하며, 혐오와 차별 주장을 ‘공공성’ 또는 ‘보건 복지’ 담론으로 포장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1. 반공국가의 정치적/신학적 기원 : 개신교 내셔널리즘과 극우 포퓰리즘적 양상

최근(한겨레 2018)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바 있는 에스더운동본부 및 산하 청년조직들은 ‘다시 독립정신’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북진 해방’, ‘선제 타격’, ‘북한 출애굽’, ‘북한동포 해방’, ‘부흥은 단 하루면 된다’ 등을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들의 열정은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북진통일전쟁’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승만이 한민족을 대표로 신과 맺은 약속(언약)이다.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에 대한 열정적 증오 감정과 신의 약속은 전쟁을 필연적 과정으로 보게 한다. 전쟁(정의)이 아닌 평화를 택하는 것은 신의 약속과 신앙에 대한 타협일 뿐이다. 이들이 전쟁과 폭력을 긍정하는 까닭은 신의 정의를 이루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흔히 ‘행동주의’로 불리는 이런 태도의 기제는 근본주의 교리나 서북청년단 같은 ‘역사적 기억’이나 ‘체험적 전통’, ‘메시아 신앙’과 사회 및 종교의 엘리트(예언자)들이 그 과정을 매개하거나 추동하는 기제로 설명되었다(김진호 2016). 즉 전쟁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신앙심의 증거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링컨과 월버포스를 ‘북한노예해방전쟁’을 정당화는 영웅적 사례로 소환하고 있다. 이들은 ‘누가 이 시대의 링컨이 될 것이냐’고 묻고, ‘비겁한 평화가 아니라, 링컨과 월버포스와 같이 이 민족

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나오기를 기도'하며, 전쟁과 순교를 독려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북한의 '노예해방'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70년 미룬 노예 해방, 예수 피로 직통 해방', "노예 상태 북한 동포 출애굽전쟁 결단하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피해감수 십자가 지자!', '비겁한 평화는 거절한다! 북한 해방 선제 타격 용단하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북진 통일'은 '하나님과 대한민국이 맺은 자유언약'이며, 그 기원은 이승만이다. 그런데, 이승만 이래, '처음으로'(2016년 10월 1일) 파면 대통령 박근혜가 북한을 향해 선전포고와 같은 자유선언을 선포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 선언 때문에 탄핵되었다.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을 마귀는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하여 탄핵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런 선언은 북한과 마귀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전쟁포고로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에 따르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3.1절 메시지는 바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유선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헌법 제4조에서 말하는 통일은 평화보다 자유를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되도록이면 평화적이길 바라지만 만약 평화적으로가 안 된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를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존의 입장을 비겁한 평화라고 비판하며, 선제타격을 통해 하루만에라도 북한 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는 '즉각주의자(immediatist)'이자 '극단주의자'이다. 이들의 언어에는 '사생결단', '죽음'의 각오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기도운동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해방, 자유,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지 부흥의 계기가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들은 비타협적 진리와 타협적 사랑과 평화를 대비시킨다.

극우 개신교가 갖는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상상력은 국가주의적이다. 이들은 에스더기도운동이 '정의로운 기독교 국가건설'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국가를 제자 삼는' 운동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인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성서의 명령에 근거한다. 이들에 따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all nations)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성경이 말하는 모든 민족은 곧 모든 나라(all nations)를 뜻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개인을 넘어서서 나라를 제자 삼라고 명하셨다. 나라를 제자 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성경적 가치의 토대 위에 세워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극우-보수 개신교는 대한민국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태생부터 '기독교 국가'라고 여긴다. 이 역시 기독교인에게는 익숙한 '선민사상'의 세속국가적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극우-보수 개신교가 상상하는 국가는 국교를 갖는 국가체제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헌법)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이 '신(God)의 국(Nation)의 건설의 귀한 기초'라고 쓰여 있다고 해석한다. 또 임시헌장 7조에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극우 개신교의 '자유'와 '해방' 등의 가치는 신정국가적 상상 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서사적인 차원을 보자면, 극우 개신교는 자유와 해방(약속)-죄로 인한 위기-자유와 해방(회개)이라는 '플롯(plot)'을 따른다. 즉 세계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것의 재현인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간의 행위

(범죄 또는 회개)와 신의 의지(해방 또는 심판)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는 사건의 연속이다. 그리고 이 정치종교적 서사구조가 국가주의 맥락에서 반공주의 서사와 결합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나님의 심판 위기-회개와 기도라는 성서의 구원 서사구조는 하나님과 남한(이승만)의 북한 해방의 약속-약속 위반(북한과 남한의 우상숭배의 죄, 분단)-심판의 위기(대한민국의 멸망, 핵전쟁)-기도 집회(에스더기도운동)와 회개의 실천(차별금지법 반대, 북진통일전쟁)이라는 서사로 덧입혀진다.

이런 점에서 극우 개신교인들은 단지 종교적으로 타락한 권력욕을 가지고 정치와 종교의 야합을 추구하는 ‘정치꾼’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국가주의적 상상력 속에 통합하려는 사람들이다. 결국 극우 개신교의 종교적/정치적 상상력은 국가체제 환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신앙전통이든 자신들의 개신교 신앙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모두 국가주의와 체제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평가한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천국(하나님의 나라)조차 ‘국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상상’일 것이다.

이렇게 극우 개신교인에게 국가주의 또는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국가론적 비전은 기독교적 가치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극우주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국가 중심의 성격을 지녔고, 개인의 윤리나 성적 정체성 등을 공통체적 규범에 종속시키며, 사회적 동일성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성향은 반-이민자 정책, 반-다문화주의, 제노포비아와 같은 배타주의와 이어진다. 그리고 이들은 ‘진정한’ - 동일성으로 표상되는 - 공동체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

극우주의의 핵심은 국가주의 또는 동일성 기반으로 펼쳐는 배제에 있다. 혐오는 국가주의적 맥락에서 타자를 배제하는 감정이고, 이주민이나 비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혐오의 정치는 국가주의를 확장/이용하는 보수주의 정권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혐오는 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극우의 집단적 감정이자 동시에 정치적 (의식적, 무의식적) 배제의 전략이다.

가령 인종주의는 극우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동성애 혐오도 인종 혐오와 동일한 심리적 기제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개신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민족적, 인종적으로 인식하기 쉽다는 점에서 타인종으로 간주되는 비기독교나 성소수자에 대한 상징적 배제 - 혐오의 정치 - 가 작동하기 쉽다.

2. 반공국가의 위기담론 : 네오 맘시즘 문화전쟁, 젠더이데올로기, 동성애독재, 퀴어페미니즘

(대중적) 우파적 상상/세계관 내에서 국가주의-민족주의-소수자혐오-반공주의 등은 쉽게 결합한다. 최근에 동성애 혐오는 보수정치세력 입장에서는 반공주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통한 보수정권 유지(또는 재창출)와 시민사회 헤게모니를 강화를 위한, 개신교 입장에서는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이 유포하는 소수자 혐오 담론은 감정을 통해 조직을 집결시키고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성소수자 혐오는 그 자체로 의미화 되기보다는 ‘비정상=맘시즘=공산주의=주체사상=종북=질병=사회적 비용’으로 계열화되는 동시에 ‘정상=건강=출산=국가경쟁력=애국’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의미화 되면서 공공성을 문제화하고 극우적 논리를 주조해 내고 있다. 이른바 ‘종북 게이’와 같은 혐오 발언이나 반퀴어문화축제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자극적 표현들은 소위 ‘국민 정서’에 호소해서 혐오 감정을 대중적으로 부추기는 것이다.

‘종북게이’나 ‘좌파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직관적인 용어들은 낯은 반공주의 프레임인 ‘종북좌파’에

동성애와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이용하여 반공국가의 위기를 사적 일상(연애-결혼-가족-건강)의 위기로 재현한다. 종북과 동성애가 한패라거나 공산주의가 페미니즘을 통해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은 네오-맑시즘을 짜깁기한 변종 나치즘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적 적화 혁명전략이다. 성해체는 다양한 성적체성을 낳고 성소수자 운동과 미투 운동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됨으로써 성혁명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수 국민들 - '성다수자' - 의 인권과 일상이 공산주의자들의 '성정치 혁명전략'(페미니즘과 퀴어이론)에 의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보다는 섹슈얼리티나 성소수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더 만연해 있으며, 후자가 전자보다 보다 쉽게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쉽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 등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확인된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네오 맑시스트들이 차별금지법을 “기를 쓰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다. “차별금지법은 무서운 법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하나님 나라”인데, “차별금지법 하나 때문에” “무너졌”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혜훈 의원, 2016, 모 교회강연²⁾)

성을 해체하는 성혁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소수 특권층” “파워엘리트”들(UN, EU 등 68혁명세대에 영향을 받은 글로벌 엘리트)의 “위로부터의 혁명”, “최고위층에 의해 강행되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그 “실체가 은폐”, “민초들의 ‘아래로부터의 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2019년 10월 8일, 홍문종 의원실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학교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 토론회에서도 “불가지론자든 무신론자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성별이라는 자연적 질서를 철폐시키려는 가공할 만한 움직임이 우리 문명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날 글로벌 성혁명을 감행하는 세력”이 남녀 성구분, 섹스를 해체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젠더로 대체함으로써 “인류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포스트모던 세계의 자연질서 해체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녀를 분리시키는 페미니즘이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젠더리즘이 강행하는 성혁명” 때문에 “성규범이 해체”되고 “타락과 패륜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에서 또 다른 발표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매우 주관적인 성개념”이고 “젠더는 인권이라고 볼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들)과 충돌”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띄어야 하는데, 성소수자들의 편향적 성취향 ... 성중독 특권을 향유하겠다는” 것이며 “선천적 보편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젠더인권은 비과학적”, “창조섭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성의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배후에 엄청난 정치적 이념성이 담긴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어울리지 못한다” 그 배후란 바로 (서구)좌파들이라는 것이다. 즉 젠더 이데올로기란 “좌파들이 만든 새로운 혁명 이데올로기”이며 “인간존엄성의 직접적 해체”와 “사회해체를 하기 위한 68혁명세대”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이 날 홍문종 의원은 대한애국당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 “동성애로부터 청년들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했다.³⁾

2) <https://youtu.be/gFJYf6hohLE>

3. 보수-복음주의 개신교 우파의 미국적 기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극우-보수개신교의 지식체계나 세계관이 극우집단이 개발한 고유한 지식체계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근본주의-복음주의-칼뱅주의(개혁주의 신학) 계열 지성운동(‘기독교세계관’론)의 저변을 통해 확장된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 스펙트럼은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정치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의 분류체계)의 세부적 차이가 발생하는 지평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혐오선동세력’ 외에는 논의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보다 문제적(critical) 입장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복음주의 입장이다. 이 온건한 복음주의적 지성담론(세계관)이 극우담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다. 4장 (6)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다.

이 담론의 미국적 기원은 대표적으로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변증가인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복음주의 우파의 공식적 지식인’이라고 할 만큼 미국 기독교 신우파의 등장과 ‘문화전쟁(Culture War)’의 논리에 신학적·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그는 ‘인본주의(humanism)’ 문화에 의한 미국 사회와 세계의 타락과 오염의 위기를 경고하며, 제리 폴웰(Jerry Falwell, 1933~2007) 등이 만든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운동을 지지했다. 이 운동은 레이건이 대통령이던 1980년대 기독교 우익계에서 영향력을 크게 끼친 보수주의 단체로 ‘기독교의 목소리(Christian Voice)’ 등과 더불어 낙태 반대, 동성애자들의 시민권 인정 반대, 학교 내 기도 부활, 당시 인종차별이 존재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지지, 국방비 증액 요구, 공화당 내 보수 인사 경제 정책 지지, 사회복지 예산 증액 반대 등을 주장했다.

4. 주요 행위자집단별 담론적 특징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개신교 주요 행위자들은 크게 교권세력, 시민/선교단체, 연구학술단체, 청년 대학생조직, 보수대형교회, 지역교회 및 평신도대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치시장에서 단지 혐오상품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에큐메니칼 진영을 제외하고 극우-보수로부터 중도 복음주의까지 광범위한 세력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계의 입장은 진보(NCCK 및 일부교단)와 보수(한기총 및 주류교단)로 정확히 나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성소수자 정죄 교리에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펼치는 개신교인들과 그 교회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지 않겠다.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모하는 입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서는 이들 세력의 특징들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나 담론적 특징들에 대해 이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상대적으로 온건한 복음주의자들은 조금 다른 범주이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보수개신교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담론을 제공하므로 (6)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3) <https://youtu.be/yt2hH1hQ1NE>

(1)

먼저, 한기총(대표회장 전광훈)과 교회언론회, 주요 보수교단들(예장합동, 예장통합 등)은 그동안 소위 '정교야합'을 통해 이해관계를 추구한 '교권세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정치나 선거 영역에서 기득권 정치세력의 정당성과 지지자 수(표 또는 여론)를 판돈으로 교회(성직자)의 상징적/물질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행위전략을 구사했다. 이 게임에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의 가치는 (점차 쇠퇴하는 세속정치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시켜주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볼모'다. 이들이 추진하는 '기독교당'도 종교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익정치세력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판돈을 키우려는 전략적 행위이다. 하지만 현재 국면에서 이 교권세력만을 문제제시하는 것은 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나 혐오선동행위를 단순히 이해관계 모델로만 축소하는 것이다. 앞서 강조했다시피 이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이루는 구성집단들 간의 관계와 이를 접합시켜주는 심층적인 담론적, 문화적 토대를 이해해야 한다.

(2)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과 증오정치도 보다 대중적인 동원과 합리적이고 내적인(신학적, 학문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며 이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개할 '두뇌'나 '운동가'들을 필요로 한다. 이미 많은 연구/활동가들이 주목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혐오선동' 조직들이 그것이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대표 길원평),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선교단체 형태를 띤 <에스터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등이 혐오선동세력의 축이 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고, 이 네트워크 내에서 파생된 수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익 정치 이데올로기를 종교 내셔널리즘의 형태로 접합시키고 혐오와 증오의 논리를 각종 학문과 발전주의 담론의 형태로 개발한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반대하는 많은 논문들과 서적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나왔다. 내용은 천편일률적이지만 이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교회와 기독교전문인단체에서 강연을 하고 유튜브를 만드는 등 영향력을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선교집회, 기도회, 지역교회의 강연회 등을 통해 평신도 대중을 동원하고 SNS를 비롯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보여줌으로써 기존 교권세력과 정치세력으로부터 그 필요성과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보수정당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정치적 퍼포먼스는 혐오실천의 본보기가 되어 공론장에서 혐오를 표현해도 된다는 신호를 대중들에게 전시하게 된다. 혐오발화가 하나의 정당한 정치적 입장의 표현(표현의 자유)으로서 인식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공공성이나 공동선에 대한 감각을 소수자 혐오 실천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극우의 혐오 연행의 전시는 공론장에서의 반인권적 연행을 하나의 정치적 입장이거나 권리로서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대중과 시민사회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이를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로서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치권은 그러한 극우적 입장을 대의제 하에서 제도화하고, 그럼으로써 '샤이(shy)' 보수 개신교인의 결집이 유도된다.

이서영과 최유경(2014)은 기존의 논의(이정희 2010; 조성대 2007)를 종합하여 2013년 차별금지법 철회과정에서 한기총, 한국교회언론회 등 이익집단이 입법과정에 개입하는 전략을 분석,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나름대로 재서술해보자면, (1)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 지지, (2) 각종 사회토론,

공청회 등에 참여하고 자기 이익을 정당화하는 정보 제공, (3) 후원금이나 정치자금 기부, (4) 여론형성을 위한 성명서 작성이나 시위 등의 선전활동, (5) 민원이나 청원제기.

바성연 등과 함께 국회의원(실) 공동주최/주관/후원(회관/도서관 등 장소 제공 포함)한 차별금지법반대/반동성애 포럼 횡수(종교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제외, 기자회견 제외, 청소년 교과서 반동성애 관련 포함, 인권법, 동성혼,성평등, 탈동성애상담운동 포함) : 2019년 8건, 2018년 3건, 2017년 3건, 2016년 3건, 후원의원 : 홍문종, 윤종필, 정갑윤, 이명수, 조경태, 조배숙, 윤상현, 김정록(격려사), 임내현(격려사) - 2019년 11월 현재.

(* 정확한 집계는 아니므로 인용은 삼가해 주세요.)

(3)

연구학술단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와 반동성애 논리를 학문적으로 정교화하고 있다. (주로 근본주의-칼뱅주의 신학에 기반한) 보수개신교의 반지성주의를 자체 극복하려는 노력은 ‘기독교학문(기독교세계관)’ 담론을 중심으로 있어왔는데, 종교엘리트지식인, 이론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 지식체계는 극우개신교의 혐오운동을 통해 (조금은 각색된 방식으로) 진정한 실천적 지식으로서 평신도대중의 일상문화에 침투되고 있다. ‘네오 맘시즘’ 담론이 그것이다. 자유한국당 행사에서 반동성애 특강을 한 최바울씨(선교단체 인터뷰)에 따르면 네오마르크스주의와 동성애가 동맹을 맺었으며, 신좌파가 동성애자들을 혁명 전위부대로 동원했다는 것이다. 종북좌파들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동성애자를 앞세워 소수자 인권 보호 헤게모니를 구축한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주장은 물론 최바울씨가 창안한 고유의 주장이 아니다. 이 내용은 (2)혐오선동조직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그 신학적 원리나 담론적 기원은 기독교학문(기독교세계관)에 있다. 소위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복음주의 지성운동의 결과가 기독교사립대학 및 신학대를 중심으로 극우적 세계관을 추구하는 지성운동의 한 분파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은 일면 역설적이다. <기독교학문학회> 산하의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도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또 최근 <엘정책연구원>(원장 이정훈 교수)도 전국 교회와 선교단체, 신우회 등에서의 강연과 유튜브 활동, 법학연구를 통해 ‘네오 맘시즘’ 비판과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논리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정훈 교수는 인권법과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역차별 받는 ‘2등 시민’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거나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한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침묵하면 기독교인의 존재 자체가 혐오가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온건한 기독교인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주문한다.⁵⁾

학회나 연구기관의 형태를 띠든, 시민단체의 형태를 띠든지 간에 이 조직의 핵심 행위자들은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성소수자인권과 차별금지의 문제를 보건과학담론과 사회경제적 비용, 세금, 인구-결혼-출산-생명담론, 청소년보호와 교육문제로 프레이밍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여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4)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739>

5) 장신대 강의, <https://youtu.be/hRyyHt9FT38>

(4)

근래(2017년)에는 문화적으로나 지성적으로 기성보수개신교 세대보다 세련됨을 추구하고 지성담론을 생산하는 <트루스포럼>이라는 대학생전국조직이 출현했다. 박근혜 탄핵 반대로부터 출발한 이들은 유대-기독교 전통에 기반한 기독교 보수주의를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북한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사명임을 인식하며, 자유와 진리의 가치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한다.

(5)

이렇게 앞서 일별한 이 교권세력과 우익시민단체들이 소위 “혐오선동세력”으로 통칭해 온 집단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적을 분명히 하고 도덕적 우위의 프레임을 짜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특정 우익/이익집단의 퍼포먼스에만 주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혐오문화와 차별구조를 간과하게 될 수도 있다. 후자에 대한 강조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다. 지역교회(신앙공동체)는 평범한 보수개신교인들의 일상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종의 학습교육기관이다. (오랜 신자라면 더더욱) 교회는 생애주기를 관장하고 인생의 의미를 제공하며 사적 일상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기관이다. 교회의 반복적인 집단적 의례와 감정의 동기화 속에서 평등이나 차별과 혐오문화는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다(정원희 2014). 나는 이전의 글(2017b)에서 극우-보수개신교의 ‘지식-교육인프라’와 ‘미시동원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보수적 세계관과 평신도의 일상적 삶을 이어주는 이 매개수단들은 혐오감정이나 극우적 이데올로기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습속화한다.

극우주의 성향이 강한 개신교인들은 소위 ‘중복좌파’ 개신교인들이 영성이 부족하고 지적으로 교만하다고 생각한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혼미케 하는 영을 따라’ 불평불만, 증오, 미움이 많으며, 지식과 교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탄압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좌파 개신교인들이 주장하는 사랑, 인권, 평화 같은 가치는 엘리트의 지식적 교만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에게서는 소위 ‘힙하고 세련된’ 좌파/지성에 대한 콤플렉스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소위 ‘힙스터 좌파’란 “노동자를 사랑할 것, 동성애를 지지할 것, 비정규직을 옹호할 것, 정부를 비난할 것 등등. 몇 가지 정치 공식만을 ‘세련된 것’, ‘우월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들을 마이너리티리그의 의식 있는 비주류로 포장”하는 자들이다. <조갑제닷컴>의 한 기고문에 따르면, “정치목사 및 신부는 [...] 젊은 사람들에게 국가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수구꼴통’이요, 도전하는 것은 ‘쿨’(cool)한 것으로 가르쳐 왔고,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동조해온 비극적 상황이 벌어져 왔다”는 것이다. 최근 우익청년들을 ‘댄디(dandy)우파’라고 명명한 것에서 우리는 우파의 문화지체적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극우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대우가 부당하다고 느끼며 분노한다. 일종의 모욕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모욕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자아상(또는 정체성에 대한)의 공격이며 ‘사회적 거부’의 증거이기 때문이다(윌리엄 어빈). 단순한 개인적 모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는 고립감을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적 상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들이 즐겨 쓰는 소위 ‘좌파독재’라는 말은 이들의 고립감 또는 소외감의 표현이다. 개신교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를 갖고 있다. 바로 ‘핍박’, ‘박해’라는

단어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이나 박해는 당대 기독교의 ‘소수자성’, 즉 ‘약자’의 위치와 결부되어 있었다. 극우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이 박해받는 소수라고 여기는 반면, 좌파-동성애자들은 권력을 가진 다수자라고 생각한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개신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조롱, 멸시, 핍박’ 당한다고 오인한다. (성)소수자 때문에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자를 가해자로, 자신들은 피해자로 위치시킨다. 최근에는 ‘역난민’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무슬림 이주민과 동성애 때문에 자신들이 ‘난민’ 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피해자 전치’ 현상은 개신교의 오랜 신앙습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종교지도자들이 만든 “종북 게이”라는 혐오표현의 신조어는 평신도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혐오의 확산과 일상화를 가능케 한다. 한편으로 이들의 이런 전략은 반공주의만으로는 동원되지 않는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소수자 혐오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기성 우파(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가 비교적 반공교육과 유사기억에 의한 반공주의-종북좌파 증오를 체화했다면, 최근의 청년우익들은 어떤 사회적 억압의 경험으로부터 ‘좌파’, ‘소수자’와 같은 증오의 범주를 소환한다. 한국 공교육의 특성상, 청년들은 대개 청소년기까지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무관심(으로서 자연화된 보수 이데올로기 체화)을 유지하다가,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오면서 갑자기 생소한 이데올로기적 선택의 장에 던져지게 된다. 사회적 경험(구조의 힘)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틀을 갖추지 못한 채(보수적 이념을 자연화한 채), 체감되는 사회적 힘들은 개인적 고통들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언어화할 수 없는 고통은 더욱 고통스럽기 마련이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고통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답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 때 종북좌파, 적그리스도, 동성애, 무슬림 등등은 자기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더 없이 좋은 익명적 타자들이다. 자신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익명적 타자)에게 부여한 이름이 바로 ‘좌파’이다.

극우 개신교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대개 그저 평범하게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고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보수적 정서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부정당하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억울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다.

사회와 정치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 사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시민적 주체가 되라는 요구는 너무 가혹한 것인지 모른다. 사회적/공적 가치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부재한 한국 사회에서 그 공백은 무엇으로든 반드시 메워지기는 해야 한다. 종교는 언제나 그 틈을 메울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진보적인 것이든 보수적인 것이든 말이다. 극우 개신교인들은 사회적 현실의 고통과 감정의 긴장 속에서 다만 개신교 안에 깊게 착근되어 있는 보수적 신념과 언어를 재활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개신교 우익단체들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과 성과주의 시스템에 의해 시달리는 대중의 사회경제적 불안과 그들의 피해의식을 ‘활용’하여 우익 헤게모니를 조립해내고 있는 것이다(단지, 일방적인 ‘이용’이라기보다는 개신교인들은 우익공동체 속에서 일종의 구원을 얻는다).

(6)

노골적인 혐오선동세력들과는 다소 다르게(온건하게?) 동성애 옹호와 혐오 사이의 입장을 취하는 집

단이 있다. 소위 (개혁적)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이 중간자적 위치는 보수개신교의 혐오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집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진영으로 규정되는 복음주의는 보수개신교의 공모세력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성애(성소수자)에 대한 이중적이고도 모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차별금지법 - 특히 '성적 지향' 조항 - 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중도보수쯤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복음주의 개신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평등문화와 입법을 위한 '다수파 전략'을 형성하는데 같은 편이 될 수 가능성이 비교적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복음주의나 칼뱅주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죄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물론 훨씬 더 전향적인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다. 복음주의 신학계는 중간지대로서 그나마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본 사안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복음주의 개신교로 표상될 수 있는 중간적 입장에는 동성애를 인정하지는 않(못)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는 입장이 존재하고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역시도 신학자들 간에 해석차가 존재한다. 여전히 복음주의 관점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한다는 주장은 주류입장으로 보인다(김승호 2016 참조). 복음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양극화"된 입장 속에서 중립 내지 중용을 지키려고 애쓴다.⁶⁾ 가령 "동성애 옹호와 혐오 사이"(황병구 2014)의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깔린 근본적인 태도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근본주의적 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긍정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2011) 식의 시혜적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안의 동성애자를 의식하면서도 동성애 정죄교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타협점으로 등장한 이러한 입장은 동성애적 끌림(성적 지향)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행동(성행위)으로 연결될 때 죄가 된 다거나(박종원 2016; 황병구 2014:82), 동성애는 다른 (성적) 범죄들과 비교해 특별히 더 나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표면적으로 보수신학에 비해 온건해 보이지만) 성소수자의 실제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고 배제와 차별문화를 더욱 은근히 재생산한다. 즉 이러한 입장은 차별금지법에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못하고, (복음주의사회운동가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관념적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의 제도화를 이루는데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입장의 한계는 소수자들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나 미시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정죄(증오) 발화나 '차별'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동성애 사역에서 중요한 점은 행동의 중지에 있지 않고 정체성의 변화에 있다"(박종원 2016: 37)고 생각함으로써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전환치료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다만 이러한 입장은 한기총과 같은 반공주의 교권세력과 에스더기도운동, 바성연, 건사연 등과 같은 혐오선동단체들과는 차이가 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종북주의와는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법제화와 동성애 정죄교리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하며, 이런 점에서 공적 정치와 사적 신앙을 극우주의 선동세력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독교에서 '동성애=죄'라는 교리가 여전히 성소수자들이 교회 내에서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주된 요인이 간과되고 있다. 많은 성소수자들은 이 교리를 단순히 교리적 명제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6) "동성애 이슈에 대하여 양극화된 모습을 보인다. 일부 교회는 진리로만 무장하여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없고 냉혈적인 반면 또 일부 교회는 은혜로만 가득하여 두아디라 교회처럼 성적 부도덕에 대하여 용인한다."(박종원 2016:34)

하는 종교지도자나 신자 공동체 내의 구체적이고 친밀한 의례(예배)나 관계 속에서 ‘혐오’나 ‘증오발언’으로서 경험함으로써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공동체에서 소외된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설교를 들을 때는 물론이고, 동료 신자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을 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 또 예컨대 동성애를 정죄하며 희화화하거나 이를 듣는 신자들이 웃으며 공감을 표할 때 많은 상처를 받는다(백은정, 유영권 2004:833). 교회 안에서 성소수자는 “‘말세의 전조’, ‘타락의 근거’, ‘창조질서의 훼손’이라는 크나큰 정죄의 대상”(박근진 2003:92)이 되며, 에이즈 환자로 대상화되기도 한다(박근진 2003:85). 이렇게 사회적 차별에 더하여 자신이 신앙하고 신뢰하는 종교나 집단구성원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이중적 억압”(박근진 2003:92)에 상태에 처하는 것이다. 주류 개신교 교회의 이러한 무심하고 성찰적이지 않은 - 사실상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 분위기는 성소수자들을 더욱 깊이 숨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교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소수자들을 향해 더욱 더 거리낌 없는 (언어)폭력과 배제를 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나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혐오선동세력이나 교권세력이 정치와 야합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거래를 잘하며 직접적인 시위를 통한 입법방해나 평신도 동원을 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선동정치조직의 전략적 활동을 포함한 보수개신교의 구조적 폐쇄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혐오문화의 저변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개신교대중은 한국 사회의 당연시된 차별과 혐오문화의 토대 위에서 혐오선동조직들과 종교엘리트/지식인들을 통해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상상이나 세계관을 학습하고 이에 따라서 혐오와 차별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의 암묵적 차별과 혐오를 극우-보수 개신교가 ‘합리적인’ 지식으로 언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교회는 대중의 무의식적인 차별적 습속을 의식적인 정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점에서 신자대중은 단순히 동원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기제가 이른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탄생하는 과정이다. 이 글의 분석에서는 한국 사회 일반의 일상적 차별과 혐오문화에 대한 고찰은 생략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기본적인 한국 사회의 암묵적인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공포서사로 조장하고 이론적 언어로 설명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여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암묵적 수준에서 이성애중심주의나 성역할 이분법 같은 차별적 습속을 지녔을지라도 정치와 공공(시민) 영역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기독교에 대한 차별’과 공산주의(네오 맑시즘)에 대한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극우-보수개신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이라고) 함으로써 평등과 차별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평신도대중의 ‘여론’이 차별주의자라는 부담을 빚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논리와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다. 보수개신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더라도 자신들은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만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개신교는 주로 극우-보수 정치시장의 유권자, 수요자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극우-보수 개신교는 극우 의제와 가치관, 더 나아가 구체적 실천전략의 공급자가 되고 있다. 특별히 보

수개신교는 극우정치에 포퓰리즘적 토대와 계기를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탈세속화 또는 후기세속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 열정과 감성적 형식들의 출현을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을 가진 정치적 주체성’의 발흥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소위 (사랑과 평화의) 종교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극우주의를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정치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종교와 극우주의의 결합에 관한 비판적 고민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 곽혜원, 명재진, 김지연 외. 2019(10월 2일). “학교교육에 침투한 젠더전체주의” 자료집. 홍문종 의원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
- 김승호. 2016. “로잔운동관점으로 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한국교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개혁논총> 40:341-373.
- 김진호. 2016. “1990년 이후 한국 개신교의 정치세력화 비판” <진보평론> 67호.
- 김현준. 2014. “광장에 선 호모포비아?: 후기 세속사회 공론장에서 공공성 투쟁”, 제3회 카이로스 포럼 자료집.
- 김현준. 2017a. “神國, 극우 개신교의 정치적 상상력: 청년선교단체 E의 ‘정치의 종교화’를 통한 ‘종교의 정치화’ 전략” <종교와 극우의 결합은 어떻게 한국사회의 변혁을 가로막고 있나?>, 맘스큐뮤날레 종교세션 자료집.
- 김현준. 2017b. “개신교 우익청년대중운동의 형성: 우익 정치에서 개신교의 효용과 문화구조”, <문화과학> 91호.
- 김현준. 2017c. “극우 개신교의 국가주의적 상상력”, <가톨릭평론> 10호.
- 김현준. 2018. “복음주의 지성은 근본주의의 인큐베이터인가?: 보수 개신교 지식 담론의 생산과 문화구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엮음, <당신들의 신국: 한국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 돌베개.
- 박근진. 2003. “한국개신교신앙공동체에서 동성애정체성 연구 : ‘로템나무그늘’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종원. 2016. “로잔운동을 통한 동성애 이해와 선교적 고찰.” <복음과 선교> 33:13-53.
- 백은정, 유영권. 2004.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신앙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과 상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서영, 최유경. 2014. “이익집단의 이익표출방식이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차별금지법안」 철회 과정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7(2): 89-114.
- 황병규. 2014. “동성애 옹호와 혐오 사이” <복음과 상황> 7월호.

발제 2.

차별금지법

: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허구적 대립 종식을 위한 패스트트랙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 : 삶의 질 개선, 평등을 향한 디딤돌

- 세계 최저의 출산률 : 한국은 전시 상태??)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역사적으로도 통독 직후 동독 지역, 동구 공산권 붕괴 후 소규모 공화국에서만 발견된 현상”이라며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외부충격 없이 한국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 벌어진 현상으론 역사상 전례가 없다”
- 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⁸⁾ - “결혼 안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사회 안전망 없이 여성들을 경쟁시키니 자연스럽게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가 되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큰 구조가 형성된다.
- 설리와 하라 : 여성 자살 시도자 중 10대, 20대 비율은 2016년 각각 8.1%, 18.2%에서 지난해 15.7%, 24.0%로 급증⁹⁾ /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있고, 18.1%가 ‘매우 자주 해봤다’고 응답.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경우가 45.7%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러¹⁰⁾
-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면 남자도 살기 좋아진다. 남성의 어깨에 있는 짐을 일부 내려놓으면 남성도 편해진다. 페미니즘이 발달할수록 남녀의 기대수명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을 주목해라. 최종목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질을 개선해 더 나은 사회에서 다 같이 살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¹¹⁾
- “저출산 극복은 단순히 인구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을 통해서 변화가 온다. 저출산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지만, 다른 문제가 일으킨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의 여성과 달리 지금 여성들은 일도 잘해야 하고 가정일도 잘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지워서는 출산율이 높아

7) “출산율 0.98명 … 세계 저출산 기록 다시 쓰는 한국” (한국일보, 2019.02.28.)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올해 출산율은 0.88명대로 떨어지고, 이 서울 출산율은 이보다 낮은 출산율 0.69명에 불과하다.

“0.88명 ‘역대 최저’, 올해 출생아 30만명 미만 될 수도” (한국일보, 2019.11.27.)

8) 라가르드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 (중앙일보, 2017.10.25.)

9) “10, 20대 여성 자살 시도 급증” (동아일보, 2019.06.11.)

10)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한 강병철, 하경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11)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할 것 … 변화는 순식간에 온다” (경향신문, 2015.10.04.)

질 수 없다. 스웨덴은 인구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변화에서 출산율이 반전됐다 내가 말하는 성평등은 남편이 아내와 일을 나누는 수준 이상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역할의 파괴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하고, 사회가 지원해야한다. 스웨덴에서는 싱글맘이나 그 아이들에 대한 낙인이 없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결혼에 대한 관념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아이 키우는데 부담이 없어지고, 그래야 출산율도 높아진다. 한 국민들이 의지만 갖는다면 그 변화는 순식간에 온다.”

2.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 보수기독교 세력의 승리의 역사

<차별금지법 제정의 수난사>¹²⁾

-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연구
-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권고안을 제시하며 국무총리에 법 제정 권고
- 2007년 10월 법무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첫 입법 예고
- 2007년 12월 법무부,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7개의 사유가 삭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결성
- 2008년 1월 17대 국회 노회찬(민주노동당) 등 차별금지법안 발의
-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양 법안 자동폐기
- 2011년 1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 2011년 9월 189대 국회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 등 11인 차별금지법안 발의. ‘성적 지향’ 삭제하고 ‘성적 평등’을 포함(18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
-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 2012년 11월 6일 19대 국회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등 10인 차별금지법안 발의
- 2013년 2월 19대 국회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등 51인 차별금지법안 발의, 4월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가 극렬한 반응’을 이유로 자진 철회
- 2013년 2월 20일 19대 국회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등 12인 차별금지법안 발의, 4월 같은 이유로 자진 철회
-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기독교 인사와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 피력
- 2017년 4월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동성애 입장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
- 2017년 5월 군내 성소수자 색출 처벌(2018년 2월 무죄 판결)
- 2017년 7월 동성애·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창립
- 2017년 9월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 낙마

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2017. 2017년 이후는 필자 정리.

- 2018년 1~2월 EBS 까칠남녀 ‘성소수자편’ 방송 이후 은하선 하차 통보, 조기종영
- 2019년 8월 연세대학교 젠더 인권 강의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
- 2019년 11월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등 44인 인권위 성적 지향 삭제안 발의¹³⁾

〈그림 1〉 1997년 대선 후보 차별금지법 입장



〈그림 2〉 2017년 대선 후보 차별금지법 입장



질 문 : 동성애자들의 생각이나 삶을 다룬 책, 영화, 연극을 본 적이 있는지? 그들의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희창 : 본 적은 없다. 동성애자들의 사생활도 인정받고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가는 점도 있다. 그러나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비치지 않는 현실에서 이들의 사회운동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김대중 : 특별히 접할 기회가 없었다. 나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지만,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 활동 역시 인권보장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인제 : 동성애는 아주 미묘한 문제다. 사회에 저항하고 자신의 성아이덴티티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화 ‘필라델피아’에 나타난 것처럼 동성애자를 하나의 신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다.

권영길 :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았다. 나는 한국 사회가 동성애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갖추었고, 당국 역시 이러한 사회 조류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게 그 이유다.

3.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vs 양성평등 No, 성평등 Yes?

- 동반연, ‘성평등’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하고 혼인 및 가족에서 개인의 평등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수순이며, 따라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어야 한다고 주장.¹⁴⁾ 이들의 양성평등은 낙태 반대. 여성은 결혼해서 애 낳을 존재, 기존의 위계적 젠더 질서를 고수하려는 것. 성차별, 성평등을 적대적인 기점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 외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관심 전무. 교회 내 여성목사 안수, 성차별, 성별 위계, 성폭력에 대해¹⁵⁾
- 『양성평등에 반대한다』(2017)의 양성평등 반대 논거
 - (1) 남성과 여성 사이에 환원불가능한 차이는 없다.
 - (2) 양성평등은 남성을 규범으로, 여성을 부수적인 타자로 만드는 방식이며, 양성평등은 동성애 남성에 대한 폄하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 결과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논리와 함께 하여 기존의 젠더 질서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¹⁶⁾
 - (3) 양성평등의 본질적인 개념적 문제는 이 세상에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 또는 간성(intersex)은 과학적 사실.¹⁷⁾
 - (4) ‘양성평등’이 법률명으로 안착하면서, “여성정책이 추구해야 할 평등은 오직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남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고 있는 현실.¹⁸⁾
 - (5)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방식으로만 이에 접근. 성불평등의 문제 중 수치로 환원가능한 것만 “문제”로 명명되고, 여성정책으로 고안된 양성평등정책에서 오히려 여성은 실종되며, 양성평등의 이름으로 기존의 여성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수적 균형을 맞추는 문제로 변질.
- 번역의 문제?: 지역화(localization)의 일환으로 “양성”으로 번역된 성주류화 정책의 한국적 수용

14) 동반연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평등에 기초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 양성 간 결합을 통해 이뤄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 ②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 ③ 개정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성평등” 헌법 개정, 사회의 기본 틀 무너뜨릴 것”, (크리스천투데이, 2017.07.27일.)

15)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대립하는 개념일까 : 보수세력의 ‘양성평등’은 기존 양성평등 개념 벗어난 차별과 혐오” (프레시안, 2018.04.07.)

16) 정희진,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2017.

17) 생물학적 차원에서 ‘양성’은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도 성은 최소 세 개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체내 대부분은 남성의 해부학적 기관을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 크기의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갖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음핵이 지나치게 크거나, 질 입구가 막혀 있거나, 남성의 페니스와 음낭이 너무 작은 경우, 혹은 남성 성기가 작고 분리되어 소음순처럼 생긴 이들, 즉 인터섹스(intersex)로 불리는 존재가 있고, 이들은 태어나는 존재로 그 자체로 정상(natural category)이다. (정희진, 앞의 글, 40쪽).

18) 배은경,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2권, 제1호, 1-45쪽, 2016.

은 관료사회의 저항에 맞선 협상의 결과물이자 당시 호주제가 철폐되기 이전 상황에서 가족 내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의 전략. 즉, 여성정책에 남성을 포괄함으로써 남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언어 선택. 그러나 번역의 문제이거나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님.

- 현재의 양성평등 대 성평등의 갈등은 복합계로서 성평등, 중층적인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연적 숙명¹⁹⁾ : sex-gender-sexuality는 연속체로서 존재하며 각기의 개념과 정의는 다른 두 개의 관계 속에서 구성. 다시 말해 sex equality와 gender equality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그 점에서 양성평등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성평등의 복잡계를 단순화하고 성평등 실행 도구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 젠더 규범, 특히 여성에 대한 기존의 젠더 규범 위반을 필연적 내포하고 있는 양성평등은 젠더 규범을 약화시키는 속성도 존재.
- 양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으로 여성이 실종되고 있는 문제는 아래 보겠지만, 양성평등의 프레임의 문제이기보다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문제. 성평등 개헌 과정에서 다수의 법조인들은 성평등이 지니고 있는 모호성이 오히려 여성이 겪고 있는 성차별의 문제를 시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 표명. 이는 서구 국가에서도 정책의 언어를 여성에서 젠더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문제.²⁰⁾
- 양성평등과 유사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진행. 젠더의 활용으로 여성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 여성을 위한 우대조치 및 보호조치와 병행해야 할 필요성으로 유럽연합은 젠더 평등에 대한 정의를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 처우와 동시에 젠더 정체성의 인정 양자 모두 병기하는 방식으로 다른 층위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의도 반영.

<유럽의회 Gender Equality 개념 설명>

젠더 평등은 공적·사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both sexes)의 동등한(equal) 가시성과 권한(empowerment), 참여를 의미한다. 젠더 평등은 젠더 차이가 아니라 젠더 불평등의 반대어이며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전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와 여성과 남성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동등하게 수용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평등은 다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현존하는 - 계급, 정치적 견해, 종교, 종족, 인종 또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관련한 - 차

19) 성평등에 내재한 상이한 개념화는 성불평등 해소를 전략은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해 성평등을 논의하는 장소와 주체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진다. 다시 말해 학계와 정책,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성평등은 성불평등에 맞서는 규범적 언어로서 같은 지향점을 지니는 듯하지만, 성평등의 구체적 내용은 성불평등의 원인 진단과 전략 모색에 따라 다른 모양새를 지닌다. 성평등은 성불평등, 성차별, 성폭력 등의 소위 모든 “여성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수용되고 유통된다. 성평등은 대안적 가치 및 규범적 목표이자 동시에 그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실행 도구이다. 도구적 언어로서 성평등은 다시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실질적 평등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논쟁적인 시민권의 관점에서 접근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은 “성”과 “평등”의 복잡한 층위와 수준들이 혼재되어 얽힌 실타래이나, 성평등의 복잡성은 성불평등을 발생시키는 복합적 억압의 매트릭스를 풀기 위한 필연적 숙명이다(허라금, 2008, “평등권이론의 발전과 현대적 의의 토론편”, 한국젠더법학회, 「헌법과 성평등 관련 법률의 향후과제」, 여성부).

20) Baden, Sally and Goetz, Anne Marie, “Who Needs [Sex] When You Can Have [Gender]? Conflicting Discourses on Gender at Beijing”. Feminist Review, No. 56, pp.3-25, 1997.

이들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평등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여성적(female)·남성적(male) 가치와 우선순위에 보다 나은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더 전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 양성평등이 함의하고 있다고 보이는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은 젠더 평등의 일부. 다시 말해, 젠더 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동등처우 관점과 “여성의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의 여성의 관점, 그리고 “차이에 동등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성인지적 정책 분석의 젠더 관점을 포괄하는 “평등 걸상(equality stool)”을 함의(Booth and Bennett, 2002).
- 여성과 남성과의 수치적 또는 기계적 평등의 필요성은 고용차별 및 법률의 형평성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잣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어떤 남성’인가 ‘어떤 여성’인가가 아닌 추상적인 성별 기호에 불과.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은 관계적이며 맥락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양성평등 대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연속성으로 접근 필요. 성평등이라는 포괄적·추상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부분적 범주로서 양성평등이 접근되어야.
- 성평등 없이 양성평등 없고, 양성평등 없이 성평등 없다.

4. 혐오의 정치 : 양성평등 대 성평등의 허구적 대립만 재생산

- 민주주의 가치 실종, 동성애 혐오로 몸집 불리는 자유한국당, 뒷짐 지는 더불어민주당, 계토화된 여성계, 분절화되는 여성정책
- 성평등에 결집하는 극우 세력 :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룬 촛불 혁명은 소위 아스팔트 우파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기득권 세력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사회질서 변동에 대한 불안감과 새로운 개혁 정부에 대한 저항을 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보수 개신교와 보수 정치세력은 동성애 반대를 통해 정치적 위력을 떨치며 그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반격은 거세지고 있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²²⁾
- 혐오 세력에 굴복하는 민주당 : 압승이 예측되었던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성평등’은 금기어. 그리고 다시 2020년 총선 전 차별금지법은 입에 담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장.²³⁾
- 그 부메랑은 여성계에 정치적 갈등의 비용이 전가되어 여성과 성소수자가 감내하고 있는 성불평

21) Source for this term: Council of Europe, Gender Mainstreaming conceptual framework, methodology and presentation of good practices - Final Report of Activities of the Group of Specialists on Mainstreaming(2004).

22) “인권조례 물고 늘어지는 보수기독교계, “조례 폐지 청구운동 확산시킬 것” (비마이너, 2018.05.11)

23) “[단독] ‘총선 때까지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인권위원장” (한겨레, 2019.09.18.)

등의 대안인 성평등은 역설적으로 성평등의 복잡계에 갇히고, 여성 기구가 그 갈등의 전투장.

- 동반연을 위시로 보수기독교 세력의 성평등에 대한 조직적 정치 공세에 맞서 여성계는 분열. 보수 여성계는 그 이전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해왔던 자신들의 관행도 부정하며, 성평등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고, 이와 반대로 일부의 페미니스트들은 그의 반대되는 성평등 YES, 양성평등 NO의 프레임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성평등 개헌안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성평등”을 담론투쟁의 전략으로 삼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 중 일부는 성평등의 용어보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으로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그에 반해 일부는 현재로서는 sex를 함의하는 법률 용어인 “성별”로 이 상황을 타개하여 차별적인 결과를 방지하자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 19대 국회 신경림 의원의 양성평등기본법 발의안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기본법이 내용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²⁴⁾ 다시 말해, 비록 성평등이 보다 포괄적인 범주로서 젠더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언어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개념일 수 있으나, 성평등기본법에서 조차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평등기본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발언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은 성평등의 근거로 주장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의 주장대로 관료사회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른 말이 아니며, “성평등이라고 쓰고 양성평등이라고 읽어도 무방”²⁵⁾
- 2015년, 여가부 관계자는 “대전시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만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성소수자와 관련한 개념이나 정책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
- 동반연 창립 이후 국민개헌 토론회장에서 성평등 개헌 = 동성애 개헌, 동성혼 합법화, 에이즈 창궐, 등등에 대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성평등 개헌 불가의 입장 약속, 성평등 문구 삭제. 여성 의원들의 침묵, 여성계 요구의 묵살.
- 2017년 11월 16일 여성가족부가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마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외치는 이들에 의해서 무산되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보수기독교 세력에 항복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성평등, 성평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며,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밝혔다.²⁶⁾ 또한 보도문을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 모두 영어의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번역한 용어이며, 오래전부터 혼용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며 단순히 용어의 문제로 치부했다.²⁷⁾
- 2017년 개헌의 모멘텀이 일부 열린 국면에서 성평등 헌법 운동가들은 성평등 헌법의 핵심에 남

24) 예를 들어, 각기 법안의 정의 부분에서 “‘양성평등’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성평등’이란 성별과 관련된 차별, 폭력, 편견 및 비하를 해소하고 모성보호와 돌봄노동을 지원하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이 두 개의 정의에서 차별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의 삽입 여부이지 그 외의 것은 사후적 “해석”의 여지의 문제이고, 이는 입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과 사법의 영역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점에서 법안 조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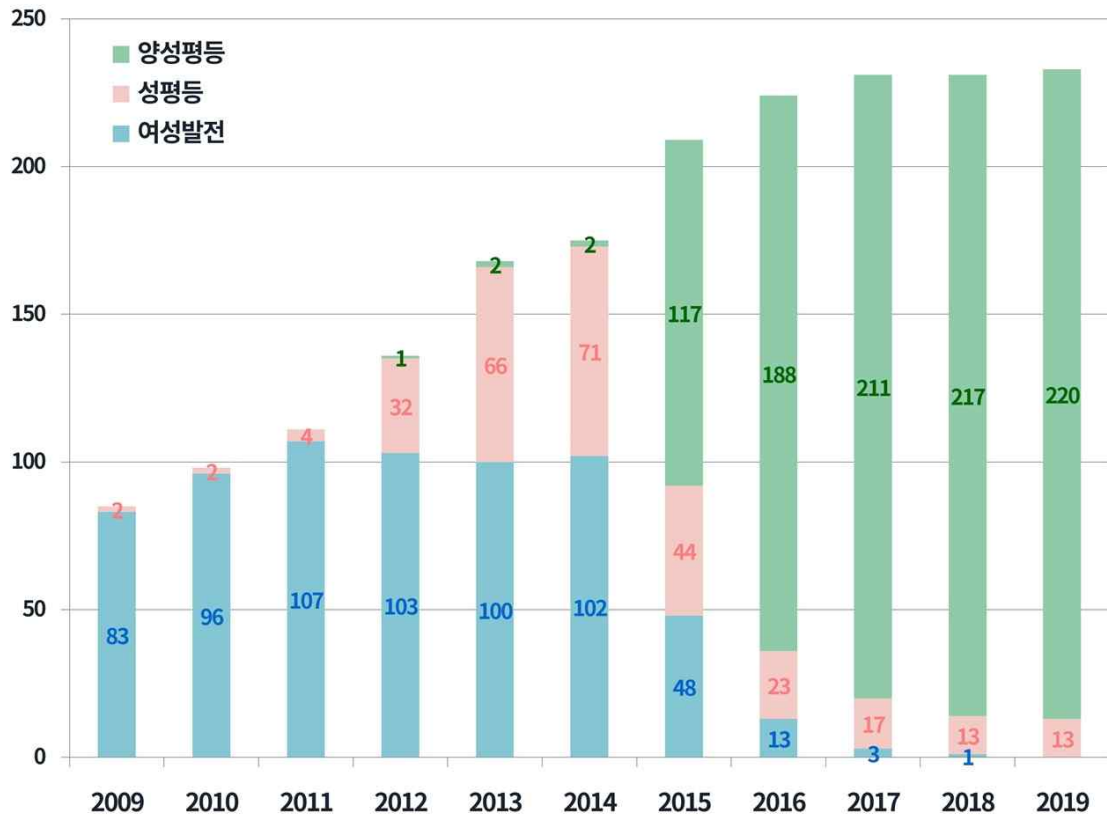
25) 김은주·이진욱·권수현·황연주. 『성평등 헌법개정을 둘러싼 쟁점분석과 대안모색』,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8. 98쪽.

26) JTBC 뉴스룸, 2017.12.04.)

27)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용어 사용 관련」 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17.12.18.)

녀동수의 명문화를 포함하였으며, 여성계 내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당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 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을 결성하여, “국가는 선출직·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동수 조항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으나, 이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제외되었다.²⁸⁾ 이에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다수 남성 위원들이 위와 같은 조항을 통해 “소수 여성 엘리트”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위 조항을 삭제.

- 성평등조례안이 양성평등조례안으로 바뀌며, 여성과 평등 실종. 더불어 성평등조례안의 이름으로도 “조례상의 성평등은 양성평등이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성을 포괄하는 성평등이 아니다”라고 주장.²⁹⁾
- 11월 28일에 예정된 “가족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 개선과제” 토론회에 여가부로부터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빼라’는 요구 불응 성명서³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분석한 여성발전/성평등/양성평등 조례의 변화. 위 숫자에는 “기본 조례”를 비롯해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성평등 자원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10월까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8) 이진옥, 「개헌의 젠더 트러블: 양성평등이 투쟁의 종착지가 된 성평등 개헌의 역설」,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94호, 2018, 147-175쪽.

29) “‘양성평등 YES’라는 구호의 진짜 문제점”, 몽 (오마이뉴스, 2019.10.25.)

30) “여가부가 가족다양성 토론문서에서 ‘동성애 빼라’ 요구” (한국일보, 2019.11.28.)

- 2005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이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폐지한 후 14년 간 입법 공백.
- ‘성희롱 금지’는 현재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흩어져있다. 성희롱 정의가 협소하고 성희롱 발생 후 조사과정과 조치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 지속적으로 제기.
- 유승희 의원은 “2005년 통합적 차별금지법 추진 과정에서 남녀차별 금지법이 폐지된 이후 성별 격차지수가 2006년 92위에서 2014년 117위로 떨어졌다”며 “이에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³¹⁾
- 고용 성차별, 성별 채용 분리³²⁾
 - (1) 2017년 하나은행 무기계약직의 여남 비율은 99:1. 그리고 정규직 중에서도 관리자급 이상에서는 이 여남 비율이 1:99.
 - (2) 서울메트로가 2016년 채용에서 합격권의 여성을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탈락.
 - (3) 9월 3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6개 지역MBC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40명 가운데 정규직은 11명으로 27.5%입니다. 반면에, 남성 아나운서는 전체 36명 가운데 31명, 즉 86.1%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아나운서 정규직 비율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죠. 지역MBC의 여성 아나운서 대부분은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고용³³⁾
 - (4) 채용성차별은 고작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성차별 금지조항 위반으로 최고 벌금 500만원을 받거나 그마저도 채용절차 서류를 폐기함으로써 증거를 은폐하고 3년간 서류보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에 불과.
- 성차별·성희롱금지법 제정 요구 :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개별적 성차별금지법 필요 주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9년 3월 29일 성차별·성희롱금지법 공청회 개최. 헌법 11조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실체법, 미투 법안의 핵심.
- 정의당 이정미 2월 27일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 3월 18일 철회.
- 반동성애 운동 진영, 성차별 금지법은 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마찬가지로 반대 동원. 주장의 근거 ‘성별’
- 반동성애 = 성차별 = 반페미니즘 = 남성연대의 외피가 양성평등의 이름으로 둔갑. 연대에 기초한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개별적 성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비현실적.
- 적극적인 평등 정책으로서 차별금지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담론의 전환 요.
-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할 것인가의 철학적 정책적 쟁점을 담아내는데 있어 양/성평등 담론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상을 나타낸다.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한

31) “‘성별·결혼여부 차별, 법으로 금지’...‘성차별 금지법’ 발의” (중앙일보, 2015.04.16.)

32) <MBC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중,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2019년 10월 1일.

33) “아나운서 경력 6년차, 후배 신입보다 적게 받는다” (오마이뉴스, 2019.11.26.)

배려를 받을 권리로서의 평등권은, 어떤 재산이나 기회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런 재산들과 기회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이다. 그는 이것을 ‘분배적 평등’과 구별하여 ‘정치적 평등’ 혹은 ‘민주적 평등’이라고 부른다”(문지영 2012: 177).

자유한국당 윤리강령 (*현 폐지)

제20조 (차별 금지)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의 친구, 교회의 동반자” -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에 대한 여성신학자들의 입장>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2차 총회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과 이에 따른 헌법 개정 결의안을 비롯한 각 교단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정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양성과 차이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들로써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재의 다양성과 차이는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존중을 받지 못한 채 혐오 대상으로 차별과 고통 속에 살았던 죄인들, 과부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바로 이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정결과 부정, 거룩과 세속의 폭력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으로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던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빛 아래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참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차별과 혐오의 폭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생명창조 역사의 파트너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소수자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의 친구, 교회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교회법이나 교단의 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단순하고도 준엄한 명령에 있습니다. 다수의 지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의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 그 가운데서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으며, ‘평화’라는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번 헌법 개정 결의안을 통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법이 하나님 사랑의 법과 사역보다 더 우선되

지 않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교회여성들과 여성신학자, 여성목회자들의 분명한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한다.

둘째, 성지향성은 찬성/반대 혹은 옹호/비난의 사안이 아님을 확인한다.

셋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정을 이슈화하여 교권과 보수 정치의 세력을 재생산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

넷째, 어떠한 사람도 성소수자의 인권과 하나님의 자녀 됨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교회, 교단, 그리고 신학교 내에서 차별받는 것에 반대한다.

다섯 째,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이해와 진지한 논의를 요청한다.

2017년 9월 28일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³⁴⁾

34) 남지현, “‘빨갱이’ 대신 동성애 혐오로 교회 결집 [현장] 기독교계 성소수자 차별 대응 긴급간담회” (오마이뉴스, 2017.10.2)

발제 3.

다수의 결정이 존중받지만 ‘지배’하지 않는 사회

● ● ● 김만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 서문 : 인간의 평등은 정치공동체가 만든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평등하지 않다. 인간을 평등하게 하는 것은 정치공동체다. 인간은 정치공동체에 속함으로써 ‘평등’을 부여받는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어떤 정치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 ‘평등’한 존재가 될 기회를 부여받는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자면 공동체로부터 그 기회를 부여받을 때 인간은 비로소 “공적영역에 편입”될 수 있으며 “차이가 다원성으로서 평등화되는 공간에서 행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³⁵⁾ 만약 정치공동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루소의 말처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슬에 묶이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태어난 곳이 어떤 사회기본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전망을 달리 만든다. 예를 들어 그 기본구조들이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곳에선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고 동료시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차별을 허용하거나 무관심한 곳에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에 시달리게 된다.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제도가 종교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문화적 이유로 거부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 옆의 누군가는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차별 앞에 모욕과 굴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은 인간으로써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밖으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추방된 자로서 외연에 포함되는 (‘호모 사케르’의)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II. 인권의 보호와 ‘다수결’이란 모순

“사상 체계의 제 1 덕목이 진리이듯이 사회 제도의 제 1 덕목은 정의이다. 어떤 이론이 아무리 앞뒤가 맞고 간결 명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각 개인(Each person)은 전체 사회 행복이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 따라서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은 어떤 정치적 거래나 사회

35)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 ch. 9.

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³⁶⁾

존 롤스가 『정의론』의 본문 첫 문단에서 선언하는 정의의 형식이다. 각 개인이 갖는 인권은 절대적인 것이기에 그 어떤 사회적 행복을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으며, 정의로운 사회는 이를 방어해내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정의의 두 원칙, 1) 기본적 자유의 평등과 2) 사회 경제적 원칙(기회균등과 최소수혜자의 보호)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 보호 대상이 사회적 약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불어 한 사회가 만드는 헌법과 관련된 모든 사회기본제도들이 이 원칙들에 따라 구현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를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이름 붙였다.

롤스가 소수의 자유 침해에 대한 ‘예외 없음’이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권의 보편성 때문이다. 사실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일반성과 달리 보편성은 그 자체로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영구한 진리’라는 이성적 속고의 결과다. 그렇기에 인권이라는 보편성에는 시제가 없다. 인권은 어제, 오늘도, 내일도 똑 같은 형식으로 존재하기에 인권의 시제는 늘 현재형(is)이다. 이런 보편성은 맥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견의 집합과 본질적으로 명백히 다르다. 우리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제로 쓰는 다수결은 이런 ‘의견의 집합’의 대표적인 예다. **보편성은 본질적으로 의견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민주주의가 소수자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인권이란 보편성이 다수의 의견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 속고해보면 인권의 방어를, 특히 소수자의 인권 방어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해결방식이 어디에 있겠는가? 인권의 보편성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III. 다수결의 아이러니

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가 차이와 이견을 인정하는 체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래의 의미에 가깝게 정의해 본다면 민주주의는 차이와 이견에 인색한 체제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합의’와 ‘동의’에 기반을 둔 동일성을 지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합의와 동의를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에 두면 민주주의는 더욱 차이와 이견에 인색해진다. 51명의 합의와 동의만 있다면 49명은 어떤 방식으로든 51명의 입장을 마치 자신의 입장인 듯 받아들여야 한다. 다수의 독재란 위험을 자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를 향한 경고는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와 피에르 로장발롱(Pierre Rosanvallon)이 대담을 통해 밝히고 있듯, 투표 자체는 개인들이 특정한 선호를 내보이며 구성원들의 의사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증명하는데도, 투표의 결과는 오로지 단 하나의 의사만 존재하는 듯 받아들여야 하는데 투표의 아이러니가 있다.³⁷⁾ 이런 투표의 아이러니는 다수결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실시된 MBC의 여론조사를 보면,³⁸⁾ “동성애자를 정치-사회-경제 모든

36)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pp. 3-4.

37) Pierre Rosanvallon, “The Test of the Political: A Conversation with Claude Lefort,” Constellations, Vol.19. no. 1. pp-4-15.

영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46%대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찬성 41%, 반대 52%”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두 가지 의미를 내 보인다. 첫째, 다수의 의사에 반대하는 또 다른 다수가 있다(동성애 결혼에 대한 여론). 둘째,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계산의 문제다(동성애자 차별금지에 대한 여론).

III. 다수결에서 시민성의 의무로

다수결과 관련해서 한나 아렌트는 『혁명론』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알고 보면 다수결(majority decision)이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참주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체에서 쓰이거나 쓰일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해 있는 기술적인 장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고유한 의사결정방식이라 보는 것은 일종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다수의 지배(majority rule)일까? 이에 대해 아렌트는 **다수의 지배란 간단히 말하자면 ‘소수자를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다수결의 타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한다.**³⁹⁾ 어느 정체이나 결정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타자를 지배하는 고유한 정당화 근거로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렌트에게 민주주의의 고유성은 관계의 평등성을 전제로 공적영역으로 입장을 허용하는 데 있다. 그 공적영역 속에서 각 개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료시민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안은 이 공적영역을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관계의 평등성이라는 점이다.**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는 지배적이며 누군가는 종속적이라는 의미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누군가를 공적영역에서 동등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그 공적영역에 입장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수결이란 틀 밖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를 위해 존 롤스의 “시민성의 의무”(the duty of civility)라는 개념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시민성의 의무는 어떻게 자신들이 옹호하거나 투표하는 원칙들과 정책들이 공적이성의 정치적 가치를 통해 지지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서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무는 또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자발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의지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공정한 마음가짐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⁴⁰⁾ 이 시민성의 의무에서 시민은 어떤 정책과 원칙을 지지할 때 그것이 왜 공적으로 타당한지 다른 동료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동료시민들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경청하고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무는 민주적 사회에서 시민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기도 하다.

롤스가 제시하는 시민성의 의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공적이성의 정치적 가치를 통해

38) 특집 여론조사...국민 59.7% “적폐청산 수사 계속해야” (MBC NEWS, 2017.12.26.)

39) Hannah Arendt, On Revolution, p. 164.

40)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P, 1993).

지지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시민들에게 말을 걸 때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 정당화해야 한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성직자의 예를 통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이리저리하다. 그것들은 교회가 사용하는 논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성직자는 속한 집단에서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직책 때문에 이성을 결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이성의 공적 사용은 언제나 나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의 선의 증진을 위한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성의 공적 사용은 나의 신념이 타자의 상황을 더 낮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밀의 표현의 빌자면 최소한 타자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만 한다. 이런 과정은 공개적인 TV토론 등을 통해 구현 가능하며, 토론의 진행자와 참가자는 이성의 공적사용이라는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정치적 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라는 나의 종교적 신념이, 경제적 이익이,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동료시민들로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는 일이 동료시민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 우리 사회는 일종의 반성적 균형상태(reflective equilibrium)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VI. 다수결에서 헌정민주주의로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여러 민주정체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이성적 숙고의 판단의 결과로서 민주정체가 보호해야 할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는데 동의한다면, 다수결이 아닌, 루소의 표현을 빈다면, ‘일반반의지’의 형식으로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루소에 따르면 일반반의지는 개인들의 의지의 총합이 아니다. 이 의지는 정체가 지향하는 공공선으로 사사로운 이익들의 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일반반의지는 대체로 헌법에 담겨 표현되며 시민들은 헌법을 통해 정체가 지향하는 공공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헌법의 원칙은 다수의 결정보다 더 우위를 갖는데, 예를 들어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체 자체의 의지의 산물로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체의 형식을 입헌 민주주의라 부른다. 미셸 로젠필드(Michel Rosenfield)는 「정체성과 다양성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현대 입헌주의(Modern Constitutionalism as Interplay Between Identity and Diversity)」(1994)에서 입헌주의 체제가 헌법에 보장된 이런 사회 정체성과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보장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제한정부(limited government)다. 제한정부의 핵심은 사회 안에 다양한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정체성이 분파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의 지배에 대한 헌신이다. 법에 대한 헌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법을 만드는 일(의회)과 법을 적용하는 일(사법부)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이 생겨나는데, 만약 하나의 기구가 이 일을 동시에 한다면 독재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인데, 사회의 지배 다수나 사회의 집단성으로부터 시민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재 소수자권리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헌법의 평등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의 평등조항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그 내용에서 소수자에 차별적이거나 모호하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 규정(제36조)은 의도치 않게 성평

등, 가족형태 등에 있어 차별적인 규정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 지향, 학력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열거하지 않은 권리’로 존재한다(제37조). 더불어 이런 열거하지 않은 권리는 ‘경시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존재한다. 우리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본 뒤에도 헌법의 평등가치에 지속적으로 호소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진정한 차별금지를 원한다면 **차별금지를 법률이 수준이 아닌, 헌법 다시 말해 ‘법의 정신’ 차원에서 구현해야 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헌법의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수자들의 유형을 명확히 열거하고 이들의 권리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헌법의 개정이 시작점이 될 수 없다면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이런 논의들이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때, 우리는 시민성의 의무를 더 많은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V.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세계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표현

앨버트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은 어떤 사회구조는 사람들이 불만을 정치에서 물러남(Exit)으로써 표현하게 하는 반면, 어떤 사회구조는 불만을 ‘목소리를 냄’(Voice)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말한다.⁴¹⁾ 이렇게 불만이 서로 달리 표현되는 결정적 요소는 불만을 해결하는 대안의 유무다. 불만을 향해 대안을 내 놓는 정체에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대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정치에서 물러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받아주는 조직은 구성원들로부터 애착(Royalty)을 받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조직은 탈퇴(Exit)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국가라는 조직의 잔혹함은 이런 탈퇴가 쉽사리 일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많은 소수자들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한편으로 이렇게 말한다. “차별은 반대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함에 있어 사회적 논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만능키처럼 작동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이런 주장은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입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에서 시민성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은 일종의 위선이 되고 만다.

어떤 이들은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무너진다고 말한다.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당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이미 무너져 있는 타자의 정체성은 어떤 지경일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까? 이런 주장을 하는 많은 이들은 타자의 정체성을 추하고 악한 것으로 그려낸다. 그 추함과 악함을 그려내는 언어는 혐오와 경멸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이 억압하는 소수자들을 향해 이 세계를 당신들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는 그 표현의 일부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내겐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렌트가 말하는 ‘생각 없음’(thoughtlessness)에 갇힌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 없음을 아렌트는 일상의 악(banal evil), 그

41)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P, 1970).

어떠한 악의적 의도도 없는 사소한 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사소한 악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그래서 다수자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란 논리로 만들어진 세계를 설명할 뿐, 복잡하고 다층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진 현실의 세계를 설명하진 못한다. 주위를 둘러보라. 이제 세계는 '차이와 이견이란 이질성이 나름의 질서를 이룬 공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공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 어떤 민주주의도 단수로 표현될 수 없는 공간의 다양성과 복수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존재의 정체성을 다수결이란 단일성의 원리에 몰아넣는 것은 이런 민주사회에서 그 자체로 모순된 행위다. 소수를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미학적으로 추하게 그려내는 혐오의 논리가 난무한다면, 그 다수의 결정이 온전한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다. 다수의 결정은 숙고된 판단을 통해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지배의 논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2부. 지정토론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김정학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
 - 김조광수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이은혜 (뉴스앤조이 기자)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 1.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김정학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7. 국무총리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 기반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로서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차별 관련 개별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 특정 분야에의 한정,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기본권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차별 정의와 유형, 판단기준 등의 통일적·체계적 제시 및 조직법에 가까운 국가인권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자 지속적으로 제기된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⁴²⁾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차별은 다양성 존중 및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인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소수자인 경우가 많은 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포용사회로의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법의 차별 영역에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질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가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3년부터 성안을 추진해 왔다. 차별 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 법률가 등과 함께 차별 관련 주요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조문 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04년 8월에 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위원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하였다.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나이, 인종, 학력, 고용형태 등 국가인권위법의 20개 차별사유를 차별의 영역으로 하였다.

2006년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7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좌초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차별금지법관련 입법 사항이 없고, 20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 발의 또한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기간을 틈타 최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 제·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차별사유 중 성적 지향 조항 삭제 등 국가인권위법 개정까지 거론하며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 층 더 세력을 모으고

42)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2008년, 2012년, 2018년), 사회권규약위(2009년, 2017년), 여성차별철폐위(2011년, 2018년), 자유권규약위(2015년), 인종차별철폐위(2012년, 2019년) 등

있다.

기독교 보수단체들은 입법 활동에 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2017년 김태흠 의원은 ‘성적 지향 삭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안상수 의원은 ‘성적 지향 삭제 및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한다’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적 지향 차별사유는 기독교 보수단체들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아 향후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서 끊임없는 소모전 양상이 될 듯하다.

김태흠 의원의 개정안 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보건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국가인권위법 제2조제3호의 ‘성적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성적 지향’ 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구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성애가 위 조항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차별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에서 금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사유로 고용, 재화와 용역의 이용, 교육시설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하는 것은 법에서 금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성적 지향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아도,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 6.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법령 및 관행의 개선을 촉구한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결의안⁴³⁾을 채택하였고, 2014. 9. 현존하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폭력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좋은 선례들을 29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⁴⁴⁾을 채택하였으며, 2016. 6.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결의안⁴⁵⁾을 채택하였고,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⁴⁶⁾, 사회

43)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14 June 2011, U.N. Doc. A/HRC/RES/17/19

44)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4 September 2014, U.N. Doc. A/HRC/27/L.27/Rev.1

45)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8 June 2016, U.N. Doc. A/HRC/32/L.2/Rev.1

46) Toonen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488/1922, 25 December 1991, U.N. Doc.

권위원회⁴⁷⁾, 아동권리위원회⁴⁸⁾, 고문방지위원회⁴⁹⁾, 여성차별철폐위원회⁵⁰⁾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는 것을 공식 문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인바,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는 입법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추락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위원회법상의 차별사유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성적 지향이 국가인권위법에서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 11. 안상수 의원의 성적 지향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안은 편견에 기초하여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권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발의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다.

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하여,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을 가진 자나 성전환자와 같이 실존하는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성별’ 역시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전

CCPR/C/50/D/488/1992; Young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941/2000, 18 September 2003, U.N. Doc. CCPR/C/78/D/941/2000; X v. Colombia, Communication No. 1361/2005, 14 May 2007, U.N. Doc. CCPR/C/89/D/1361/2005

47)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1 August 2000, U.N. Doc. E/C.12/2000/4, para. 18; CESRC, General comment No. 15: The right to water (Articles 11 and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 January 2003, U.N. Doc. E/C.12/2002/11, para. 13; CESRC, General comment No. 18: The Right To Work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 February 2006, U.N. Doc. E/C.12/GC/18, para. 12; CESRC, General comment No. 19: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rticle 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 February 2008, U.N. Doc. E/C.12/GC/19, para. 29; CESCR, General comment No. 20: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2, para.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 July 2009, U.N. Doc. E/C.12/GC/20, para. 32

48) CRC, General Comment No. 4: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 July 2003, U.N. Doc. CRC/GC/2003/4, para. 6

49) CAT, General Comment No. 2: Implementation of article 2 by States parties, 24 January 2008, U.N. Doc. CAT/C/GC/2, para. 21

50)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28 on the cor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6 December 2010, U.N. Doc. CEDAW/C/GC/28, para. 18

원합의체 결정)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 라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였다.

우리 「헌법」(제10조 및 제11조)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모든 개인’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안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사람(성전환자, 간성 등),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요구이자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인바,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다. ‘성적 지향’은 국가인권위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법의 차별사유 성적 지향 조항의 삭제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의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된 성별, 성적 지향 등 우리 사회가 이미 확보한 차별사유 전반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2.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김조광수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지도 못한 20대 국회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정기 국회는 고작 1주일 여 남아 있지만 그마저도 패스트 트랙 정국으로 요동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든 정리되면 국회는, 정당은, 의원들은 총선을 향해 치달아갈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20대 국회 회기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현실이다.

*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는 가능한가?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차제연과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법률안을 만들었고 발의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발의 최소인원인 10명을 만들지 못했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지만, 정의당 6석 + 4석 이상을 만들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민중당과 민주당 의원(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 중심)들과 접촉을 했지만 최소 4명의 의원을 만들지 못했다. 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 개별 의원 접촉, 설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절감
- 다른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의당은 21대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할 것이고 총선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금의 예상으로는 발의 의원 10명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발의가 곧 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제정을 위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 민주당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 개별 의원 접촉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 국회 내 동력의 중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의당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
- 국회 외 동력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질 것인가

* 아직은 외부자의 시선

차제연의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차제연이 이전의 반차별공동행동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와 활동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름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제정을 위한 운동보다는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제정을 목표로 한 전략과 전술이 잘 보이지 않는다.

토론 3.

차별금지법 제정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2016~17년 촛불광장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기존의 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였다. 광장의 개혁 열기가 대선과 이후 현실정치를 통하여 제도 개혁과 국가 개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기대의 이면에는, 여소야대 국면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1700만 촛불 이후에도 기존의 질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장기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무력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문제인 정부 집권이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우려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상황들은 최소한 멈춰 서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현실과 제정을 위한 전략

1. 보수 기독교를 포함한 혐오선동세력

-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인은 분명함
-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의 요인 중 과잉대표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혐오선동세력의 발호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필요
- 혐오선동세력의 공격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고 이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 이상의 구체적인 법 제정의 당위를 강화.

2.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전무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된 분위기임(의원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보수선동세력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전히 대표적인 기피사유로 보여짐)
- 정치권의 의지 없음을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임

-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수구보수정당들은 보수세력 집결을 위한 개혁세력 공격의 역사성을 가진 주요한 무기로 ‘차별’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진보 정당들의 단순히 피해가 전략만으로는 집권 유지와 연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각인시킬 필요 있음(뻔하게 예상되는 악의적 수법에 매번 허둥지둥하고 있는 상황)
- 종북 프레임이 이전처럼 선거에서 유효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혐오선동세력이 수구보수의 결집을 위하여 노골적으로 차별을 선동하고 있으며(매주 광화문 극우집회가 증명) 이에 기생하는 수구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내년 총선전략이 필요

3. 법과 제도의 영역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 필요

- 관련 법이나 제도에 대한 헌법소송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시도(호주제 폐지, 낙태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등 오랜 시간 헌법적 논의 끝에 변화된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운동전략을 결합)
- 정부와 국회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기타 방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장애요인을 무력화
- 헌법재판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검토 필요(헌법재판관 구성비율/헌법재판의 기속력 등등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 필요)

4.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의 확장

- 법 제정을 위한 연대기구의 구성이나 주요활동의 주체가 인권운동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에서 오는 다양한 현안들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중요성에 비해 자주 호명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 존재
- 최근 사회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불평등’이라는 점은 이런 조건에서도 법 제정 운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현대입헌주의국가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전제이며 불평등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 확장의 전제임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
-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독교단체, 교회 내부의 주체들을 연결하고 간담회, 토론회 등등의 방식을 통하여 차금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전략 공유
-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등등 이미 제도권 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영역의 주체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중사업 전략을 함께 논의(보편적 평등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간 인식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전략 모색)

토론 4.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이은혜 (<뉴스앤조이> 기자)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이 포함된 채 그대로 통과되면, 학교나 교회에서 동성애가 나쁘다는 소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권고면 좋은데 강제 규정이다. 만약 동성애자가 고발이라도 한다면, 징역 2년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뉴스앤조이>가 2007년 11월 2일 보도한 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전용태 변호사와의 인터뷰 기사 일부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차별과 관련한 가짜 뉴스는 존재했다. 그때는 저명한 인사, 목사의 입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각종 소셜미디어, 유튜브 가리지 않고 유행처럼 우리 곁을 떠돈다.

저 말은 분명한 ‘가짜 뉴스’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된다”,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강연하면 잡혀 간다”, “강사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초청한 목사도 잡혀 간다”, “거리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외치면 경찰이 잡아 간다”,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된다”는 부류의 주장은 거짓 선동에 해당한다.

12년 전의 <뉴스앤조이>는 이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치자. 하지만 법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저런 주장은 거짓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대로 실어야 했다면 추후 사실을 짚어 주는 차원의 보도를 했어야 맞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의 <뉴스앤조이>는 “성적 지향이 포함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혀 간다”는 말의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국 개신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2010년, 두 번째 차별금지법 발의 때 격해졌다. 당시에는 위와 같은 주장이 더 많이, 더 자주 언급됐다. 교계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들은 모두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했다. 목사들의 말은 따옴표 처리되어 (기독교 계열) 언론에 그대로 실렸고 그들의 말은 아무 확인도 없이 기정사실이 되어 버렸다.

정치 기사에서는 ‘따옴표 저널리즘’, 흔히 말하는 받아쓰기 기사가 논란이 됐다. ‘막말’에 해당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신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에서도 따옴표 저널리즘은 빛을 발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허위·왜곡 정보들이 목사 혹은 자칭 ‘동성애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면 교계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수년간 반복된 ‘가짜 뉴스 받아쓰기’는 이것이 가짜가 아닌 ‘해석의 차이가 담긴 다른 뉴스’라는 기이한 논리로 둔갑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세력의 거대 확성기 역할을 한 교계 언론 덕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이슈는 이미 한국 개신교계에서는 한쪽으로 심히 기울어 버린 운동장이다. 12년 전 소

수의 목사·엘리트가 주도한 운동은 정치력·조직력·자금력 삼박자를 골고루 갖춰 교계 전반에 깊게 스며들었다. 이들은 토론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

한쪽으로 심히 기울어 버린 운동장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뉴스앤조이>가 2016년 이후 반동성애 세력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실지 않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이 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반동성애 운동은 누군가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신교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상황에서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한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 구름 위에 떠다니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인권 이슈에서 중간이 있을 수 있을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에서 양쪽 입장을 다 실는 ‘기계적 중립’, ‘공평한’ 보도는 겉으로는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을 불모로 한 것임 또한 명심해야 한다.

토론 5.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디까지 왔는가

2011년 초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2013년 말~2014년 초 사무국만 남겨놓은 채 잠정 휴지기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2013년 상반기를 지나며 국회와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금기어로 만들며 철저한 침묵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이 시기 침묵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든, 또는 상징하는 가장 결정적 사건은 2013년 4월 민주통합당 최원식, 김한길 의원의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안 철회 사태이다), 이렇게 정치권의 침묵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제연은 입법을 목표로 내건 연대체로서의 활동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차별금지법과 차제연을 다시 불러낸 것은 시민들이었다. 차별과 불평등, 혐오의 문제가 더욱 심해져가는 와중에 시작된 촛불 정국과 페미니즘 리부트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요청과 기대를 불러왔다. ‘차별금지법’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점차 빈번하게 소환되기 시작했다. 사회의 요구에 힘입어 차제연은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2017년 3월 더욱 많은 단체들과 함께 재출범하게 된다.

재출범한 차제연의 활동은 이전에 비하여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차제연은 국내 차별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고민하는 크고 작은 대표적인 단체들이 함께 하는 연대체(2019. 11. 말 기준 총 131개 단체)로 성장하였고, 각 지역의 인권/반차별 조례와 정책들을 둘러싸고 차별과 혐오 선동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차별에 대한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네트워크들이 전국 전역에 걸쳐 만들어지게 되었다. 차제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벌이는 한편, 반차별과 평등에 대한 구체적 담론을 형성하고, 혐오의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하며, 운동영역·지역·의제를 교차하며 차별철폐와 평등을 위한 대중을 조직함으로써 한국 사회 반차별과 평등을 향한 너른 토대를 만드는 운동을 펼쳐왔고, 201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단독의제로 건 첫 집회, 2018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친 평등행진은 의제를 가로질러 대중을 조직하는 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반차별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9년 1월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호응 역시 매우 높아졌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구가 아직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적어도 법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로 나아갈 사회적 준비는 이미 충분히 되어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들이 흩어진 채 유의미한 정치적 목소리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수년 간 전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차별금지법 철회 사태 이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시도는 끊겼으며, 주요 정당과 정

치인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다. 차제연이 2019. 10. 한 달 동안 <빠띠>와 함께 진행한 <#정당은응답하라> 캠페인은 시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 메일을 각 정당 대표들에게 보내는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에는 1,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나, 정의당과 민중당만이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했을 뿐 나머지 정당들은 무응답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내부 인사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검토하겠다는 응답들이 있었으나 결국 침묵을 선택하였다<#정당은응답하라> 캠페인의 경과와 결과 보고는 첨부자료 참고. 급기야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축소하여 정의하는 내용의 개악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2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차별금지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2018. 2.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 중 22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 즉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기본법 제정과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2019. 9. 18.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 국회, 정당 등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할 주체들이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치가 민주주의 공론장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사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무엇을 넘어서야 하는가

현재 차별금지법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발제문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토론문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담론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래 두 명제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법이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두 명제는 서로를 배척하는 명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두 명제는 서로를 밀어내는 것처럼 작동해왔으며, 차별금지법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은 두 명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차별을 주장하는 보수개신교계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는 그야말로 소수자들(만)의 문제이기에 굳이 보수개신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을 추진할 메리트가 없다.’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러

한 논리로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였고, 개별 사안으로 성소수자 차별, 이주민·난민 차별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두 이슈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가급적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앞서 혐오표현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덜 연상시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이슈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적 지향’, ‘성별’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개악하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발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소수자 문제를 최대한 가리고서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과연 유효한지 의문이다.

차별금지법을 다루고자 하는 언론 역시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겪는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극심한 차별을 겪는 소수자의 사례를 요구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 그러한 차별을 겪지 않는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명제들 사이의 표면적인 갈등은 근본적으로는 여성운동이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로 명명해온, 기존의 차별적인 구조 안에서 차별받는 지위에 놓인 이들이 전형적으로 겪게 되는 보편과 특수의 딜레마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이전에 이 문제에 아주 거칠게라도 대답하는 담론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반차별과 평등의 문제를 ‘보편’의 문제로 접근해본 사회적 경험이 아직 많이 쌓이지 않은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보편’이라는 용어는 많은 경우 배제와 편향을 선형적으로 가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 토론문에서는 배제된 이들의 도전을 받고 끊임 없이 재구성되는, 계속되는 완성의 과정 중에 있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차제연을 비롯한 반차별운동 역시 이 두 명제를 잇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운동영역·지역·의제를 교차하는 반차별운동 안에서 이를 설명하는 공동의 언어를 만들고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다. 두 명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하는가 또는 이해하게 할 것인가는 단지 차별금지법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핵심적인 질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되, 이 문제가 특정한 ‘소수자’의 문제(그리고 그에 연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평등원칙을 세우는 문제임을 진심으로 알게 되는 것”, 이 사회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촛불 이후 지연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시민사회와 반차별 운동 진영 - 모든 이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평등의 문제를 드러내기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과 헌법의 정언 명제는 한낱 문자에 불과할 수 있다. 존엄과 평등에서 배제된 이의 관점으로 이 명제를 들여다보고 의례적인 원칙을 ‘실제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 명제들은 현실을 바꾸는 힘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싸움을 통해 존엄과 평등의 얼굴을

새로 그리고 현실의 권리를 더욱 '보편적인' 내용으로 재구성해내는 과정, 이것이 인권 운동의 역사이고 민주주의가 갱신되는 과정이다. 차별금지법 논쟁은 우리 사회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그에 기반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누가 빠져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이렇게 드러난 원칙과 현실의 간극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평등원칙,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살아있는 규범과 가치로 만드는 과정이다.

차별금지원칙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동등하게 사회 각 영역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평등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인종, 종교, 출신민족 등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중 무언가를 제외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더해지는 순간 원칙의 보편성은 힘을 잃고 만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성소수자’, ‘무슬림’, ‘난민’을 ‘건강한 일반인’과 분리하고 낙인찍는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때, 이렇게 타겟이 되는 성소수자, 이주민·난민의 존재감을 지우지 않고서도 어떻게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구성해낼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모습을 다양한 성별, 섹슈얼리티, 인종, 장애 등의 지표를 지닌 몸들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차별금지 원칙을 포함한 ‘평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려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 인권운동·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수행해야하는, 어렵지만 건너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 과정의 전부일 수는 없되, 이 과정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차제연은 2018년 ‘지방선거 혐오 대응 전국네트워크’를 꾸려 지방선거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을 수집하고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벌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 ‘평등정책TF’를 제안하여 차제연 안팎의 단체들과 함께 ‘차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모두의 이야기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담론 틀’을 초월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가족’을 주제로 한 평등정책의 구성에 이어 ‘노동’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차제연은 총선 시기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이어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기획들이 인권운동·반차별운동을 넘어 시민사회 전체의 공동의 과제로 세워지기를 희망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 현재 문제되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론의 장 열기

기존 제도권이 성소수자와 이주민·난민 등을 타겟으로 한 차별과 혐오 주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정치적 금기어로 만들어 침묵하고 정치적 공간을 모두 닫아버린 상황에서, 인권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론장을 다시 여는 것이다.

먼저 지금 문제 상황의 핵심에 성소수자와 이주민·난민, 이슬람 등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애도 없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인 의미로 축소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이미 후회적으로 접근하여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총선 시기 성소수자와 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

히 하고, 총선 시기 혐오발언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회피해온 제도권의 대응이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도록 조장해왔음을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성소수자와 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나가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되, 그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근본적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 언어로 계속 설명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적인 소란 없이는 침묵 기조에서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을 상황이다.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의 장을 먼저 엮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고민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 국회와 정당 - 편향과 배제의 정치가 아닌 더욱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정치를 재구성하기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어렵다고 강변하나, 실제로는 기존 정치가 대변하고 있는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기존 정치가 남성/중년/비장애인/사회경제적 기득권/이성애·성별이분법주의/인종주의·선주민 중심주의 등을 편향되게 대변해왔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하며, 이러한 정치인들이 스스로 ‘보편자’를 자처하며 ‘소수자’까지 미처 아우를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고 말하는 상황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를 성찰해야한다. 우리에게 ‘소수자’에게 한 자리를 내주고 끼워주겠다는 정치가 아니라, 기존의 편향과 배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더욱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장으로 재구성하고자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성소수자,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그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이 국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단호하게 맞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회와 정당 내부에서부터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성소수자와 이주민·난민 인권에 관한 교육, 내부의 반차별 정책과 입장이 필요하며, 총선 시기 정치인들의 차별·혐오 선동을 예방할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야할 것이다. 총선 시기 성소수자, 이주민·난민을 비롯한 사회적 차별에 맞서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차별금지법을 새로 열어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할 정당과 정치인들을 기대한다.

• 정부와 지자체 - 차별 시정, 평등 실현의 헌법상 책무를 공식적인 형태로 명시하고, 차별금지원칙의 관점에서 법/정책을 점검·시정하기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 그럼에도 정부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유예함으로써 차별과 혐오가 강화되는 토대를 오히려 만들어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 년 간 혐오정치가 강화되어온데 이어 최근 40명의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을 당당하게 발의하는 사태에 이른 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어 차별을 시정할 법률을 만들 수 없다’며 인권원칙을 훼손시키는 담화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반복해온 결과라는 점을 많

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성교육표준안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 최근 여성가족부가 가족다양성정책포럼의 토론문에서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논란, ‘불법 체류자’라는 명명을 고집하고 있는 법무부의 정책,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난 법무부 후보자 정책 선언 등은 정부가 단지 소극적인 방관자일 수 없고 제도적인 차별을 만들고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등권 실현의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선언하고 평등과 반차별의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법률이 차별금지법임을 상기해볼 때, 차별금지법 제정의 유예가 차별적인 법·제도·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헌법적 책무에서 국가 스스로를 면책시키는 효과 또한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은 2007년 이래 ‘인종,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13번 반복하여 한국에 권고해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조치를 주문하며,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계속해오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헌법상 책무인 차별금지원칙을 확인하고 실현하는데 ‘사회적 논란’, ‘사회적 합의 없음’이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담론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차별과 혐오 주장을 정당한 의견의 하나로 수용함으로써 평등,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온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는 성소수자, 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차별 시정을 포함하여 평등을 실현할 헌법상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공식적인 형태로 명시하고, 차별금지원칙을 기준으로 기존 법·정책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12년간 유예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지킬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이는 피해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첨부] <#정당은응답하라> 결과 보고

- 진행기간 : 2019. 10. 1. ~ 2019. 11. 8.
- 참여인원 : 총 1,205명
- 병행된 오프라인 집회
 - | 10. 17.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집회
 - | 10. 24. 민주평화당 당사 앞 집회
 - | 10. 31. 자유한국당 당사 앞 집회
- 답변 결과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응답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무응답
 -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무응답
 -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답변1] 참조
 -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무응답
 - | 조원진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 : 무응답
 - | 이상규 민중당 대표 : [답변2] 참조

■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각 정당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

1.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으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10년 넘도록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국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침묵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효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2.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의 인권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귀 정당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3. 한국 사회에 차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별, 성별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귀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4.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반차별운동단체들과 면담에 응하겠습니까?

침묵은 혐오를 번식시키고 평등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존엄을 키울 것입니다. 귀 정당이 평등을 말하는 데 앞장서주시길 촉구합니다.

■ [답변1] 정의당 심상정 대표

1.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의 당론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5일에는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 소수자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싸워오신 김조광수 감독을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아직 법안 발의요건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의당은 제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및 제정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넘어 이들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직화,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당을 포함한 일부 정치세력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포기한 채 ‘표’를 의식한 언술과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비록 법안 발의는 하지 못했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혐오범죄 가중처벌 등을 위한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왜곡과 혐오행위를 금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소수자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를 이미 운영해왔으며,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최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주축이 된 이주인권특별위원회와 미투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에 한국 사회에 산적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동성 간 성행위 처벌을 폐지하기 위한 「균형법」 개정안(김종대 의원), 언론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성차별, 성희롱을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정미 의원) 등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발의는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 HIV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성별변경 요건 완화 등 관련 법률 개정,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이주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차별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노력에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되어 제21대 국회 정의당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과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가칭)「동반자등록법」 등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답변2] 민중당 이상규 대표

1. 민중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통합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국회에서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멈추어있고 진전하지 않는 평등은 혐오에 대한 용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민중당 역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중당은 당내에서 당직 및 공직 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성평등, 장애평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9월 29일 민중당 대의원대회에서 '성평등 강령'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강령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앞서 언급된 인권 교육들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교육과 논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 조건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민중당은 3.8 여성의날 집회, 쿼어문화축제, 노동절, 세계빈곤 철폐의 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차별과 혐오로 선동을 일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중당은 선거철 혐오발언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3. 민중당은 차별의 불식과 평등사회를 위해 균형법 제92조의 6페이지 발의에 함께한 바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평등행진조직위원회에 함께하여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결합법, 재생산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여성건강기본법, 에이즈 예방법 전면재개정 및 19조 폐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100%보장, 성폭력 범죄 성립 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반차별운동단체들에 감사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중당은 지난 8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과 만남을 통해 평등을 위한 논의와 행동에 함께하겠습니다.

2019 차별금지법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공동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심상정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 발행일 2019년 12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 메 일 : equalact2017@gmail.com

| 홈페이지 : equalityact.kr

| 페이스북 : facebook.com/equalact2017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 차별금지법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공동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심상정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 발행일 2019년 12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 메 일 : equalact2017@gmail.com

| 홈페이지 : equalityact.kr

| 페이스북 : facebook.com/equalact2017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